

| [공통사항] | |
|------------|--|
| ◆ 시민안전공제는?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군·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 ◆ 보장기간 | ☞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
| ◆ 보장내용 | ☞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 ◆ 주요용어 | ㉠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 - 피공제자 생존 시 : 본인 / 사망 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
| ◆ 공통면책사항 | ㉠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 ◆ 소멸시효 |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자연재해란? |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사고의 정의 |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사고의 정의 |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사고의 정의 |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사망]

|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사고의 정의 | ㉠ 뺑소니 사고 -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보험자동차 사고 - 피공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사고의 정의 |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 후유장애]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사고의 정의 | ㉠ 뺑소니 사고 - 피공제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보험자동차 사고 - 피공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강도 상해사고 사망]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사고의 정의**
 - ㉠ 강도 사고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 ㉡ 강도 사고의 입증
 -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 ㉢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 ㉣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익사사고 사망]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사고의 정의**
 - ㉠ 익사 사고
 -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익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애]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단,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사고의 정의**
 - ㉠ 강도 사고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 ㉡ 강도 사고의 입증
 -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 ㉢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 ㉣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사고의 정의**
 - ㉠ 의료 사고
 -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 공제기간 만료 후의 의료사고
 - 공제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공제기간 만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공제등록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
 - ㉣ 회원이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의료사고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

- ◆ **보상하는 손해 (만13~18세)**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일당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사고의 정의**
 - ㉠ 억류상태
 -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기타규정**
 - ㉠ 공제금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공제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일 ()만원을 90일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회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고의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미아찾기 지원금]

- ◆ **보상하는 손해 (만8세 이하)**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사고의 정의**
 - ㉠ 미아상태
 - 길을 잃음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괴, 납치로 인한 실종은 제외합니다.
- ◆ **기타규정**
 - ㉠ 피공제자가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공제등록금액 전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 후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공제등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단순가출로 행방이 불명한 경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보상하는 손해 (만12세 이하)**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사고의 정의**
 -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및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의사자로 판정된 경우 :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별표2]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의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규정**
 - ㉠ 의사자(義死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 의상자(義傷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 성폭력범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의 인정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의 의해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 강력범죄 - 「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 단, 「형법」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에 의한 신체상해를 입은 때는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강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피공제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에 기인한 손해 ㉣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한 손해 ㉤ 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 성폭력범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의 인정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의 의해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농기계의 범위 | ㉠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애]

- ◆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농기계의 범위** ㉠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 ◆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사고의 정의**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 **가스의 범위**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 ◆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가스 상해사고 사망]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사고의 정의** ㉠ 가스의 누출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 **가스의 범위**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 ◆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사고의 정의** ㉠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전세버스의 범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
- ◆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사고의 정의**
 - ㉠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전세버스의 범위**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 ◆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 치료비
 -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기타규정**
 - ㉠ 담보지역 : 공제가입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 증권상 언급된 지역(회원명)을 말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 ㉢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 ㉣ 기타 약관(본문)에서 정한 사유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
- ◆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 사망공제금
 - 담보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기타규정**
 - ㉠ 담보지역 : 공제가입자(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 증권상 언급된 지역(회원명)을 말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 ㉢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 ㉣ 기타 약관(본문)에서 정한 사유

[유독성물질 사망]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서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사고 분류항목**
 - ㉠ 비아편유사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간질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 정신작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유기용제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그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일산화탄소 및 기타 가스 및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유해생물방제제(농약)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 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준용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물놀이 사망]

|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 ◆ 물놀이의 범위 |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놀이가 목적이 아닌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 경기 또는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 선박에 탑승한 경우 ※ 단, 물놀이를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나, 유선 및 도선에 탑승한 경우는 물놀이를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낚시어선에 탑승한 경우 ㉥ 주택 내에서 머무르며 물놀이를 한 경우 ※ 단,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하며,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입구 안쪽공간, 기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문의 안쪽공간을 말합니다. |

[자전거 상해 사망]

|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사고의 정의 |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 ◆ 자전거의 범위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산악자전거(MTB) 활동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헌혈후유증보상금]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등록금액을 헌혈후유증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 헌혈후유증 범위 |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헌혈 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 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 |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애공제금([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사고의 정의 |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 ◆ 자전거의 범위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산악자전거(MTB) 활동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 ◆ 용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아나필락시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아나필락시스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아나필락시스 진단확정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항체, 항원검사, 유발검사 및 피부시험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
| ◆ 사고 분류항목 | ㉠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 ◆ 용어의 정의 |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화상수술비]

|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 지급합니다. |
| ◆ 용어의 정의 | ㉠ 화상 :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수술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는 제외합니다)의 관리 하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 단, 사고 전 상태로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 |
|---------------------|--|
| ◆ 보상하는 손해 (만6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2]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교통사고의 정의 |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 자동차의 범위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 [온열질환진단비]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등록 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 ◆ 용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온열질환이라 함은 [별표6]온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온열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제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 ◆ 사고 분류항목 | ㉠ 열사병 및 일사병 ㉡ 열실신 ㉢ 열경련 ㉣ 탈수성 열탈진 ㉤ 염분상실에 의한 열탈진 ㉥ 상세불명의 열탈진 ㉦ 일과성 열피로 ㉧ 열성 부종 ㉨ 열 및 빛의 기타 영향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사고의 정의 |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단, 사고라 함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합니다. |
|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로 인한 피해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애] | |
|--------------------|---|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애공제금([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사고의 정의 |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단, 사고라 함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합니다. |
|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로 인한 피해 |

| [사회재난사망] | |
|------------------------|--|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 ◆ 사회재난의 정의 |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 ◆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규정 | ㉠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 ◆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공제금(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 금액)을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 **용어의 정의**
 -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애]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 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애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 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용어의 정의**
 -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애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 ◆ **자연재해의 정의**
 - ㉠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 ◆ **보상하는 손해**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 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애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 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 **사회재난의 정의**
 -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 **주요면책사항**
 -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